고용노동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4.(수) 12:00 (2026. 11. 5.(목) 조간)

안전 필수템 '위험성평가'를 통해 모든 일터를 안전하게!

- 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 전부개정고시 발령
- 노동자 참여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갈무리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11월 4일(수) **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(고용노동부 고시) 전부 개정안을 발령**하였다. 이는 최근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과 시기 등 세부 기준을 정비하여 **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**한 것이다.

위험성평가는 **사업주**가 **노동자와 함께** 사업장의 유해·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**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**으로, 2013년 제도화된 이후 산재 예방을 위한 **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수단**으로 자리 잡았다.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위험성평가를 **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**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, 이에 정부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('26.2.) 및 동법 시행령('26.7.), 시행규칙('26.5.)을 개정하여 **노동자의 참여권을 강화**하고, **과태료 규정을 신설**하는 등 **제도를 개편**한 것이다.

이번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〈1〉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모든 사업주가 **위험성평가를 실시**하고, **노동자를 참여**시키도록 하기 위해 **위험성평가 과태료 규정이 신설**되었다. 과태료는 상시근로자수 **50인 이상** (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) 사업장은 **2027년 1월 1일**부터, **50인 미만** (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) 사업장은 **2028년 1월 1일**부터 시행된다.

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행위		과태료 부과 기준(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❶ 위험성평가 **미실시**		500	700	1,000
❷ 노동자 **미참여**		150	300	500
❸ **노동자대표**의 요구에도 **미참여**		150	300	500
❹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의 **노동자 미공유**	실시일정 & 결과	150	300	500
	실시일정 or 결과	100	200	300
❺ 위험성평가 결과 **미기록·미보존**(3년)		50	150	300

정부는 **처벌이 아닌 현장의 자율 이행을 유도**하는 데 중점을 두고 **과태료 규정을 운용**할 계획이다. 또한, 모든 사업장이 과태료 적용 대상이므로, **모바일로도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**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,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**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속 제공**할 계획이다.

〈2〉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노동자대표 참여가 보장됩니다.

현장의 위험을 **가장 잘 아는 사람**은 **실제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**이므로,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. 이에 **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**하기 위한 **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가 신설**되었다.

노동자대표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**참여를 요구**하는 경우, 사업주는 **노동자대표와 참여 일정·방법·범위 등**을 **협의**하여 **참여**시켜야 한다. 협의 과정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, 사업주와 노동자대표 모두에게 **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배려와 노력이 요구**된다.

〈3〉 노동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.

① **노동자의 안전이 작업 시작 전에 확보**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**실시 시기를 개편**하였다. 이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된 위험 요인들을 모두 개선한 후에 **노동자가 작업을 시작**해야 한다는 **기본 원칙을 반영**한 것이다.

구분	기존 고시	개정 고시
최초평가	▲사업 성립 후 **1개월까지 '착수'**	▲최초 **작업 시작 전까지 '실시'**
수시평가	▲**산재의 경우, 작업 재개 전**까지 실시	▲**모든 경우, 작업 시작 전**까지 실시
정기평가	▲**'1년마다'** 재검토(엄격한 1년 주기)	▲**'매년 1회 이상'** 실시(평균적 1년 주기)

② **노동자 참여를 활성화**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위험성평가 **실시 일정**을 사전에 알리도록 **새롭게 규정**하였다. 또한, 신규 채용되거나 작업 대상·내용이 변경된 노동자에게는 **작업 시작 전**에 해당 작업과 관련한 **위험성평가 결과**를 안전보건교육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**공유**하여야 한다.

③ **도급사업장**의 경우,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'각각' 실시하도록 했던 기존 고시 규정을 **'각각' 또는 '공동'**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. **공동으로 실시**하는 경우에는 **도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, 수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**하여야 한다. 이를 통해 **수급인 노동자**가 사용하는 기계·설비 개선 등 **실질적인 안전환경 조성**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정부는 제도 개편 사항이 **현장에 안착**하도록 사업장 **안내·홍보**에 **총력을 다할 계획**이다. 우선적으로, 사업주단체 등 **유관기관과 협업**하여 내년부터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 **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**으로 **집중적인 홍보와 교육**을 추진한다. 또한, 고시에 담지 못한 **세부 내용을 안내**하기 위해 **사업장 안내서**와 **FAQ 해설서**를 다양한 정책 길목을 통해 **연내 배포**할 계획이다.

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"이번 **제도 개편**으로 **위험성평가**가 **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**으로 자리잡게 되는 **계기**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"라면서, "형식이 아닌 **실효적인 위험성평가**가 **현장에 정착**될 수 있도록 **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**해 주시길 당부드린다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준호 (044-202-8920)
		담당자	사무관	김두진 (044-202-8923)
			주무관	박수호 (044-202-882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안내 인포그래픽

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안내

위험성평가를 통해 모든 일터를 안전하게!

01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

위험성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의무 위반 행위		과태료 부과 기준(만원) 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1 위험성평가 **미실시**		500	700	1,000
2 노동자 **미참여**		150	300	500
3 노동자대표의 요구에도 **미참여**		150	300	500
4 **노동자 미공유**	실시일정 & 결과	150	300	500
	실시일정 or 결과	100	200	300
5 위험성평가 결과 **미기록·미보존**(3년)		50	150	300



과태료 시행일

- **50인 이상**(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) 사업장은 **2027년 1월 1일**
- **50인 미만**(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) 사업장은 **2028년 1월 1일**

02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

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노동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됩니다.



03 기타 제도 정비

노동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.



①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정비

구분	기존 고시	개정 고시
최초평가	▲ 사업 성립 후 **1개월까지 '착수'**	▲ 최초 **작업 시작 전까지 '실시'**
수시평가	▲ **산재의 경우, 작업 재개** 전까지 실시	▲ **모든 경우, 작업 시작 전**까지 실시
정기평가	▲ **'1년마다'** 재검토(엄격한 1년 주기)	▲ **'매년 1회 이상'** 실시(평균적 1년 주기)

② 노동자에게 실시 일정 공유 규정

③ 원하청 공동위험성평가 실시 근거 마련

위험성평가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?

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(KRAS) 활용	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 → KRAS(위험성평가) → 위험성평가 실시
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	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 → KRAS(위험성평가) → 위험성평가 안내 → 위험성평가 컨설팅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	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 → 사업신청·조회 → 지원사업 신청 →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